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28 July 2020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정부는 2020.07.22.에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이전가격, 국제조세 및 관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1.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이전가격

- **APA 소급기간 확대** : 쌍방은 5년 → 7년, 일방은 3년 → 5년으로 APA 소급기간이 확대됩니다.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작년 법 개정 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에서 면제 확인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법원 확정판결 관련한 상호합의절차 보완**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 개시의무 배제 규정, 자동종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국조법 편제 개편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조법 편제가 5장(章), 6절(節), 5관(款), 59조(條)로 개편됩니다.

(2) 국제조세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외납세액공제 개정 : 손금산입방법이 삭제되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이 5년 →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월공제 기한 종료까지 미 공제된 외납세액은 이월공제 기한 10년 지난 다음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기산일이 종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조정됩니다. (국세환급금 기산일이 예전의 납부일 기준으로 환원되는 개정입니다.)
- CFC 규정의 수동소득 범위 확대 : CFC 과세 강화를 위해 수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도 수동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 손금불산입 후 적정기간 후에 손금산입/익금산입으로 사후관리하는 규정을 단순화하여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를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국조법 및 법인세 체제 정비 : 이자, 배당, 사용료 (장비임대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규정은 국조법 → 법인세법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 국조법으로 이관됩니다.

각 개정안에 대한 현행/개정안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 (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 (관세)

(Tel: 02-2112-754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소급적용 허용기간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input type="checkbox"/>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3년 → 5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같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③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u>매년 6월말까지</u>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u>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u> ○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u>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u>	<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연장 ○ <u>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u> ○ (좌 등) ○ <u>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u>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국조법 §22②1호, §23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호합의 개시* *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① 법원의 확정판결 ② 신청자의 무자격 ③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 ④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input type="checkbox"/>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조정 ① 법원의 확정판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②~④ (좌 동)
<input type="checkbox"/>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일 ○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신청철회일	<input type="checkbox"/>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확정판결일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요청을 하거나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①, ② 동시 충족) ①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 ②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국조법 §22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재*의 세법상 근거 신설 * 권한있는 당국이 선정한 각 1인과 제3자(총 3인)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방식, 상호합의 절차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시요건)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input type="checkbox"/> (시행요건) 신청 대상시기,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합의(조세조약 제·개정 사항)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절차 위임) 중재 신청방법,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조세조약 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편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2단계) 장(章), 조(條) <input type="checkbox"/> 8장, 49조 <input type="checkbox"/> 제도별 장(章)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1장: 총칙 <input type="checkbox"/> 제2장: 이전가격세제 <input type="checkbox"/> 제3장: 과소자본세제 등 <input type="checkbox"/> 제4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input type="checkbox"/> 제5장: 국외증여세제 <input type="checkbox"/> 제6장: 상호합의절차 <input type="checkbox"/>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input type="checkbox"/> 제8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4단계) 장(章), 절(節), 관(款), 조(條) <input type="checkbox"/> 5장, 6절, 5관, 59조 <input type="checkbox"/>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및 제도별 절(節) 신설·구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이전가격세제* * 5개 관 신설 - 제2절: 과소자본세제 등 - 제3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 제4절: 국외증여세제 <input type="checkbox"/>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절: 상호합의절차 <input type="checkbox"/> 제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input type="checkbox"/> 제5장: 벌칙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같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③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③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u>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u>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u>매년 6월말까지</u>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u>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u> ○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u>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u>	<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연장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 (좌 동)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익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p>※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p>
<input type="checkbox"/> ①세액공제와 ②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p>①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p> <p>②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p>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손금산입 방식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의3①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총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국조법 §17의3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④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좌 동) ○ ① ~ ④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선박·항공기·장비의 매각손익은 제외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국조법 §15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좌 동)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삭 제)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현 행	개 정 안						
<p><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법인세법></p> <p><input type="checkbox"/>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p> <p><input type="checkbox"/>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p>	<p>「소득세법」 (§119 10호 및 §156의8), 「법인세법」 (§92 9호 및 §98의7)으로 이관</p>						
<p><소득·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p>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소득법 §165의2, 법인법 §121의2)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실거래 명세서 등</p> <p><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p> <p><input type="checkbox"/>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해외 부동산</td> <td>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td> </tr> <tr> <td>해외직접투자</td> <td>(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td> </tr> </tbody> </table>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관세

주요 개정사항 요약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범칙사건 등 부당행위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거나 수정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무관세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기초로 관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수리전'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 전기식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 **통관 관련 제도개선** : 통관보류 후속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 개선** : 관세평가는 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과세가격 결정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주요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세법 §35 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범칙사건 등 부당행위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거나 수정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과세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특수관계자 수입업체의 자발적 자료제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42, §42의 2)

현 행	개 정 안
<p>□ 관세 가산세 : 다음 금액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무관세 물품에 대한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협정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무관세물품 가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한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 등 - (10~20% 감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예시:**

- 관세율 : 0% / 정상 수입가격 : 100만원
- Case1: 50만원 과소신고
- Case2: 무신고
- Case3: 부정행위 무신고

[관세 가산세]

	Case 1 (50만원으로 과소신고)	Case 2 (무신고)	Case 3 (부정행위로 무신고)
현행	부족세액 (0원) X 10% = 0원		
개정	누락 과세표준 (50만원) X 0.8% = 4,000원	누락 과세표준 (100만원) X 1.6% = 16,000원	누락 과세표준 (100만원) X 3.2% = 32,000원

* 기존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형태를 의미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 시사점

무관세물품도 부가가치세 탈루, 국내시장 공략 등을 위해 과세표준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세가 무세인 경우도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가격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고가신고하는 경우 가격조작죄,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관세법 §30, §37조의 4)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
(관세법 §30④·⑤, §37의4⑥·⑦)

현 행	개 정 안
<p>□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 가격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 제출 요구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p>

<개정 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27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시 1억 원 이하 부과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 (좌 등) ○ 상기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 (30일 내 이행) 미이행시 -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 원 + 2억 원(총 최대 3억 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기존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관세조사 진행 시에 과세자료 미제출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케이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최대 3억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조사 시 특수관계자 수입업체에 대한 자료요청과 그에 따른 자발적인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